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4482
결재일자	2016.3.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복지조사관리 2팀	복지정책과장	복지환경국장
김우영	차진숙	유재용	03/02 장기현
협 조			

국민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

2016년 상반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 계획

- 추진근거 : 부구청장 방침 제19호 「2016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」
- 기 간 : 2016. 3월 ~ 6월
- 조사대상 : 조건부과제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자녀
- 조사내용
 -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 재학 확인조사(3월중)
 - 기초수급자 가구원 양육·간병 확인조사(4월중)
 - 기초수급자 주3일이상근로 여부 확인조사(5월중)

복 지 환 경 국
복 지 정 책 과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 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(확인조사)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(조건부수급자)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항(정의), 제10조(지원대상자조사), 부구청장 방침 제19호(2016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))	
사업 추진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 확보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 산 팀 조 ()
이해관계인 유 무	○ 주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자 원 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 필 요 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국민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

2016년 상반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 계획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, 2016년 상반기 조건부과제외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 확인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□ 반기별 조건부과제외자¹⁾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

- 근로활동 유지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대학 재학 및 양육간병 등을 이유로 조건부과 제외 가능
- 반기별 보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누수 예방

□ 적정한 조사·관리를 통한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 기능

- 대학 재·휴학생의 소득 공제 반영을 통한 수급자의 권익 향상
- 대학 재학여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연장 (대학 재학시 만22세까지 보장 연장)

II 2015. 조사대상자 현황 및 추진실적

□ 2015년 상·하반기 대학생 재학 확인조사

- 조사건수 : 1,192명 (기초수급 659명, 한부모가족 533명)

보장구분	국민기초생활보장					한부모가족		
	대학 재학	주3일이상 근로자	환경적응 (졸업자 등)	휴학, 수험 준비 등	미진학		대학 재학	졸업 및 미진학
조사결과					근로능력 있음	근로능력 없음		
건수(명)	440	45	38	71	20	45	436	97
처리결과	조건부과제외			조건제시유예	조건부과	조건미부과	자격유지	자격중지

1) 조건부과제외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중 개인의 여건상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(대학생, 가구원 양육간병자, 주3일이상근로자 등)를 의미함.

□ 2015년 상·하반기 양육간병 확인조사

- 기초수급자 158가구 조사 / 135가구 적정, 23가구 부적정 확인

보장구분	국민기초생활보장				
	양육	간병	변동 발생(양육간병 비대상)		
주3일이상근로자			근로능력있음	근로능력상실	
조사결과					
건수(명)	38	97	2	11	10
처리결과	조건부과제외		조건부과	근로능력평가	

Ⅲ 2016. 상반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 추진

□ 추진기간 : 2016. 3 ~ 6월(4개월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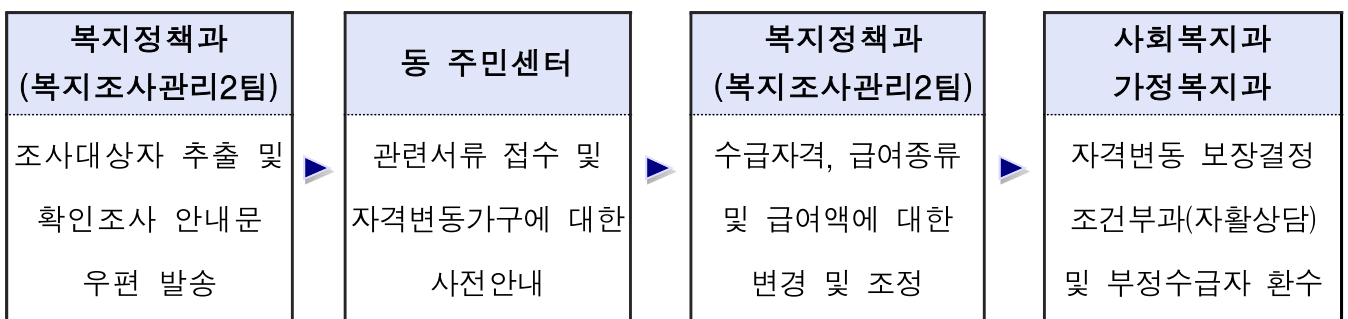
□ 대 상 : 조건부과제외 수급자(대학생, 가구원 양육간병자, 주3일이상근로자)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고교 졸업생 자녀

□ 추진방향

- 법률 및 지침에 따른 합리적 자격관리 및 적시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의 예방
- 자격변동에 대한 철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수혜자 소명기회 제공

□ 조사내용 : 조건부과제외 사유의 적정성 확인(서류제출 및 실태조사)을 통한 복지급여 보장의 유지 및 중지 검토

□ 추진절차



IV

세부추진계획

1. 상반기 대학생 재학 확인조사 실시

□ 추진기간 : 2016. 3. 2 ~ 3. 31(4주간)

□ 대 상 : 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 및 한부모가족

-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(1998년 3월 이전 출생자) 수급자 *신규조사대상자
-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대학 또는 원격 및 학점은행제대학 재학 중인 자
-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 18세 이상 만22세 미만(1994~1997년 출생자)인 자

□ 조사방법

- 재·휴학증명서 징구를 통한 대학생의 재학 및 휴학, 졸업 여부 사실조사
- (기초수급) 장기 졸업유예자 및 최소학점 수강자 등 **형식적 재학생 조사 강화**
 - ▶ 대학 장기졸업유예자의 조건부과제외 기간 **최장6년**으로 제한
 - ▶ 대학 4년 이상 재학(8학기 이상 이수)시 이수학점 **8학점 이상**으로 제한
- (한부모가족)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**군복무기간을 가산**하여 보장연장

□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관리

조사결과	처 리 내 용		소 득 액 공 제
	수급자	한부모	
대 학 생	조건부과제외 (최대 6년)	보장유지 ※ 단, 연령 (만22세)초과시 중지	30만원 + 잔액의 30%
원격·학점은행제 대 학 생	조건제시유예 (주3일 18시간이상 출석)		
장기졸업유예 및 최소학점 수강자	시험준비 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시 조건제시유예 (최대 1년)		
외국대학 재학생	6개월 이내 해외출국 90일 초과시 중지		
휴 학 생	조건제시유예 (발생 익월부터 3개월)		30만원 + 잔액의 30% (수급자는 최대 1년간 적용)
만18세 이상의 고등학생	조건제시유예 (20세이상의 초·중·고 재학생)		20만원 + 잔액의 30%
졸업·중퇴자	조건부과제외 (발생 익월부터 3개월)	보장중지 (연령초과)	-

2. 상반기 양육·간병 확인조사 실시

□ 추진기간 : 2016. 4. 1 ~ 4.22 (3주간)

□ 대 상 : 미취학자녀 양육 또는 질병·부상자의 간병 중인 기초수급자

□ 조사방법

- 동 주민센터의 가구별 방문상담을 통한 실제 양육·간병 여부 조사
- 인정요건 해석의 명확화를 통한 조사기준 확립
 - ▶ 양육·간병으로 조건부과제외 가능한 가구원은 **가구당 1인**
 - ▶ 양육·간병할 수 있는 다른 근로유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 조건제외 불가
 - ▶ **미취학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또는 장애아동 양육시**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**조건부과제외 (2016년 지침변경사항 반영)**
- 기준에 따른 조사결과를 [붙임2]사실조사확인서 기재하여
조사 결과가 모두 예(Y)일 경우 조건부과제외, 아니오(N) 있는 경우 조건부과

3. 상반기 주3일이상근로자 확인조사 실시

□ 추진기간 : 2016. 5. 2 ~ 5.20 (3주간)

□ 대 상 : 주3일이상 근로중인(월 60만원 초과소득 신고자) 기초수급자

□ 조사방법

- 소득신고서 징구를 통한 수급자의 **소득 증감 및 현재 근로사실 유무 확인**
- 과거 신고 이후 미갱신된 **소득자료의 현행화**를 통한 급여지급의 건전성 확보
 - ▶ **최근 1년 이상 공적자료(국민연금공단, 국세청 등) 미수신자 집중조사**
 - ▶ 현재 소득 월 60만원 이하의 수급자 조건부과 등 후속조치 철저

V

행정사항

- 서류 접수 및 내방민원 상담, 미제출 가구 독려 ----- 동 주민센터
- 조건부과제외·유예 보장결정 및 조건부과자 자활상담 ---- 사회복지과(자활고용팀)
-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결정 및 부정수급액 환수 ----- 사회복지과(생활보장팀)
보육여성과(출산다문화팀)
- 조건부과제외 및 유예 기간만료 후 조건부과를 통한 근로유능력 수급자 관리 및
연령도래 한부모가족 자격관리 철저 ----- 복지정책과(복지조사관리2팀)

- 붙임 1. 대학생 재학확인조사 안내문(기초수급, 한부모가족) 서식 각 1부.
2. 양육·간병 사실조사확인서 서식 1부.